

국제기술교류회 선정 공고

국제기술교류지원재단은 산업별 민간 중심의 국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국제기술교류회를 다음과 같이 모집 및 선정하오니, 관심 있는 기관은 아래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16. 1. 4

산업통상자원부 장관

I. 사업목적

- 민간중심의 국제기술협력교류 활성화 지원을 통해 국내 중소·중견기업의 국제기술 교류 저변 확대 및 혁신기술 중심의 R&D 과제발굴 등을 목적으로 함

II. 신청자격

- 국제 기술교류 역량을 보유한 국내 중소·중견기업, 연구기관, 대학 등

유형	내용
중소기업 및 중견기업	‘중소기업’이란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(중소기업 범위)에 따른 기업임 / ‘중견기업’이란 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 1호의 기업임
전문생산기술연구소	「산업기술혁신촉진법」 제42조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」
정부출연연구기관	「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
산업별 협회	해당 산업분야에서 국제협력 역량을 보유하여 국제 민간기술교류를 지원할수 있는 역량 및 체계를 보유한 협회
대학	국제협력 역량을 보유하며, 특정 산업분야에서 국제 민간기술교류를 지원할 수 있는 역량 및 체계를 보유한 대학
기타 기관	국제협력 역량을 보유하며, 특정 산업분야에서 국제 민간기술교류를 지원할 수 있는 역량 및 체계를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기관

III. 지원내용

- (협력대상국) 미국, 일본, 독일 등 15대 중점 기술협력국가를 협력대상으로 하며 필요 시 기타 국가도 가능

<15대 중점 기술협력국가>

유형	대상 국가
기술·시장 우위국 (8국)	미국, 캐나다, 독일, 프랑스, 영국, 스페인, 이탈리아, 일본
주요 기술국 (4국)	스위스, 네덜란드, 핀란드, 이스라엘
주요 시장국(3국)	중국, 인도, 러시아

※ 기술력(IMD 기술지표), 시장규모, 기술무역수지, 기술협력 수요 등을 반영하여 선정

- (지원내용) 선진기술 확보를 위한 기술 교류 활동을 지원

○ 기술교류 활동유형

- 필수 활동 : 국제기술교류지원 플랫폼 구축을 위한 선진기관과의 국제 공동 포럼/컨퍼런스/세미나 등의 국내외 기술교류회(국내기업-해외기관 B2B 미팅 등 매치메이킹 프로그램 필수 포함)

※ 기술교류회 행사 개최 시 기업 참여 필수

- 선택 활동 : 인력교류, 정보교류, 협력 희망기업 수요조사 및 발굴, 특정기업 대상 기술자문 및 국제공동 R&D 추진 지원(오프라인) 등

※ 제안 컨소시엄은 수행하고자 하는 기술교류 활동에 대해, 과제의 최종목표 달성 측면에서의 의의 및 기여도를 명확히 제시

○ 기술교류 수행기간 : 국제기술교류회 별로 3개월 범위 내에서 다수의 교류행사를 설정할 수 있으며, 다수의 교류행사 추진 시 평가 우대함

- 예시) 1개의 교류회가 3개월 범위 내에 1 ~ 3차 교류회 행사를 계획할 수 있으며 1차 교류행사 개최 후 사후 평가를 실시하여 우수 판단 시 후속행사 사업비를 지원함

- (지원분야) 선진기술 확보를 위한 첨단기술협력을 목적으로 하며 분야 제한없음

□ (지원규모)

○ 지원금 : 건 당 250만원 ~ 1,000만원 내외

- 정부지원금 대비 현금 매칭 20% 필수
- 예산 규모는 기술교류회 개별 평가를 통해 차등지원

○ 예산 집행 항목 및 규모

- 경비 : 기술교류회 진행을 위한 장소임대, 홍보, 전문가비 등(자체 공간 활용 시 평가 우대)
- 해외 전문가 초청비(항공, 숙박, 전문가 자문료), 현지 출장 여비 (교류회 참여 연구원, 수요기업 동행 시 자비 부담)

□ (지원조건) 국제기술교류지원사업의 취지 및 목적에 부합해야 하며, 개별 기술교류회는 국제기술교류지원재단이 후원(단독/공동)하는 사업임을 공지할 것

○ 공동주관사업의 경우, 전체 기술교류회 사업계획과 재단 지원금의 담당 영역을 구분하여 제출

- 과제 종료 후 국제기술교류지원재단과 정보공유, 성과 홍보회 참여 등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함

V. 평가절차 및 기준

□ (평가절차) 공고 및 접수 ⇒ 서류검토 ⇒ 선정 평가위원회 ⇒ 교류회 선정

□ (평가방식)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발표평가를 통해 선정

* 발표일시 및 장소는 제안서 접수 후 안내

□ 평가기준

○ 사업계획의 적정성(40), 추진역량 및 전략(30), 기대효과(30)를 평가

평가항목		평가요소(내용)
사업계획의 적정성 (40점)	사업 목적과의 부합성	• 국제기술교류지원사업의 취지 및 목적, 시행계획과의 부합성
	사업 추진 내용의 우수성	• 민간 커뮤니티 조성 지원 전략의 적절성 • 국제기술교류의 목적 및 추진방식의 적절성
추진역량 및 전략 (30점)	추진주체의 역량	• 해당산업분야 전문성 및 국제협력 역량 • 사업비 사용계획의 적정성 및 효율성
기대효과 (30점)	관련산업의 파급효과	• 관련 산업의 국제 민간기술교류 확대에 대한 기대효과 • 과제 종료 이후 민간기술교류회의 자발적 후속관리 계획

□ 우대 가점 사항

- 운영기관의 사업비 현금 매칭 30% 이상일 경우(3점), 40% 이상일 경우(4점), 50% 이상일 경우(5점)

민간 현금매칭 비율	30%~39%	40%~49%	50%이상
가점	3점	4점	5점

- 1개의 교류회가 2회 이상의 연속적인 교류행사 기획 시(2점)

IV. 지원절차 및 일정



VI. 관련근거

-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(고시 제2015-259호)
-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, 관리 및 사용, 정산에 관한 요령(고시 제2015-260호)
- 산업기술혁신사업 평가관리지침(국제기술협력사업) (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 16호)

VII. 기술료 징수 및 성과활용

- 해당 사업은 기술개발에 따른 수익사업이 아니므로 기술료 징수 면제
 - * 관련근거 :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40조(기술료의 징수, 사용 및 관리), 제41조(사업종료 후 활용보고 및 평가)

VIII. 사후관리

- (결과 평가) 사업종료후 간담회를 통한 현황 및 발전방안 논의
- (주요 평가사항) 계획대비 사업 추진상황 및 성과 도달정도 및 기타 사업추진과 관련된 제반사항 점검

IX. 유의사항

- 신청 제외대상
 - 운영기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, 신청과제의 내용이 세부 사업별 기본목적, 개발특성,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
 - 사업에 참여하는 자(운영기관, 총괄책임자)가 접수마감일 현재 동 사업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
 -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,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

량자(운영기관, 운영기관의 장, 총괄책임자)

- 기타 산업기술혁신사업 ‘공동운영요령’ 및 ‘평가관리지침(국제기술 협력사업)’ 상 지원제외, 사업계획서 반려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등

□ 유의사항

-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
- 사업계획서 내용에 허위 기재사실이 발견 시에는 평가심사대상 제외, 협약 해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
-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 및 부속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지원 제외될 수 있음
- 필요시 신청서 제출자에 대하여 추가적인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신청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님
- 평가결과는 운영기관 책임자와 실무담당자에게 e-mail로 통보

X. 신청방법

□ 신청서류

- 사업계획서 1부

□ 제출방법 : 이메일 접수

* 구비서류가 미비한 경우 보완요청을 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접수를 반려함

□ 접수기한 : 수시접수 (4월 30일 종료)

- 교류회 행사는 2016년 5월 31일 개최까지 유효

□ 접수 및 문의처

- 접수처 : smchoi@fitn.or.kr (최수명 선임연구원)
- 문의처 : 국제기술교류지원재단 최수명 선임연구원, 02-6009-8245
- 국제기술교류지원재단의 세부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: www.fitn.or.kr